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남)남해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 5.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3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예적금 잔액 통보·확인업무 등 철저

내규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 지침」 제13조 및 제22조 등에 의하면 전월말 조합원수 대비 1/100 내지 3/100 범위 이내의 조합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반기별로 예적금 등의 잔액을 통보·확인하여야 하고, 일상감사시 일상검사원은 예탁금 해지 등 일일 점검항목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0년에는 자체감사시 예적금 등의 잔액을 통보·확인하지 않았고 2011년~2014년 기간 중에는 년 1회만 통보·확인하였으며, 일상감사시 예탁금 해지 등 일일 점검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는바,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예적금 잔액 통보·확인 업무 및 일상감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순환근무 이행 철저

내규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 지침」 제6조에 의하면 직원이 동일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순환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0.1.1.~2014.4.17. 기간중 ○○○ 등 15명이 동일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는바,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3) 고객통장 보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내규 「수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2장 제7절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사고 방지를 위해 예금주 통장, 인감 등을 임의 보관할 수 없고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통장에 한해 간부직원의 승인을 얻어 책임자가 금고 내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02.6.10.~2015.3.3. 기간중 ○○○ 등 43명의 예금계좌(72건)를 개설하고 통장 및 거래인감을 임의로 보관한 사실이 있었는바,

앞으로 고객의 거래인감을 보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의 통장 보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간부직원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통장보관 장소를 특정하는 등 고객통장 보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